



덤핑방지관세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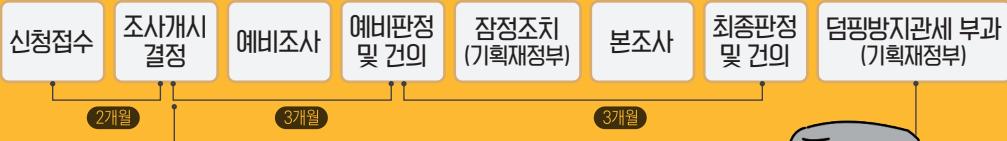


01 개념

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**덤핑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.**



02 조사절차



*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씩 연장 가능

03 판정요건 및 조치사항

판정요건

- 덤픽물품의 수입사실
-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
- 덤픽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

조치사항

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필요 범위 내에서 관세부과(단, 덤픽차액을 초과할 수 없음)





상계관세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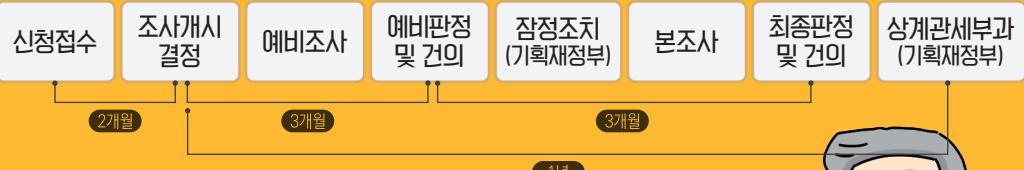


01 개념

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
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물품을 국내로 수출하여
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
구제하는 제도입니다.



02 조사절차



*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씩 연장 가능



03 판정요건 및 조치사항

판정요건

- 보조금 존재
- 국내 동종산업의 실질적 피해
-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과 피해의 인과관계

조치사항

보조금의 범위내에서 관세부과





세이프가드제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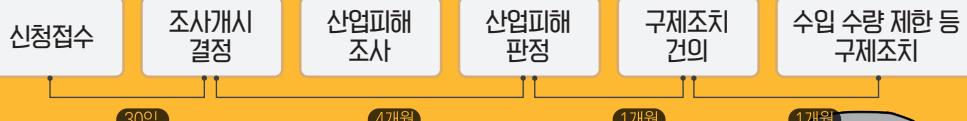
01 개념

외국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.

해외산업

국내산업

02 조사절차



* 산업피해조사 기간은 2개월 연장 가능

03 보상·협의 절차 및 조치사항

보상·협의 절차

공정한 수입에 대한 조치이므로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취하고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허용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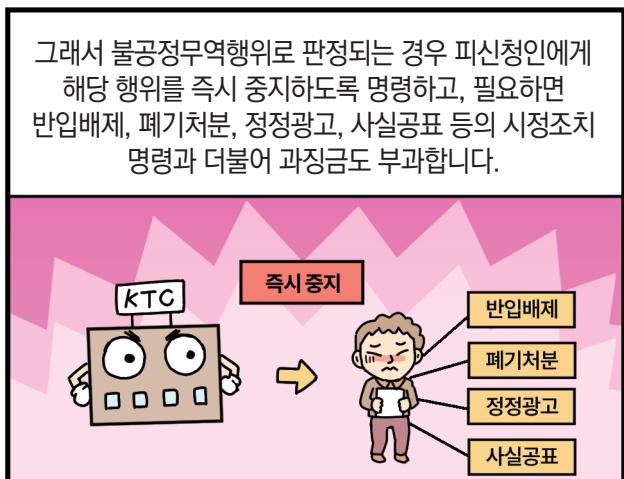
조치사항

수입수량제한, 관세율인상 등 조치





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



01 개념

지식재산권 침해물품, 원산지표시 위반물품, 품질 허위표시물품의 수출입 행위 등을 조사하고 위반업체를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.



02 조사절차

신청접수

조사개시 결정

불공정무역행위
조사

불공정무역행위 판정
및 제재조치 결정

제재조치 시행

↑
20일
↑
↓
6개월 이내
↑
↓

*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기간은 2개월씩 2회 연장 가능

03 신청요건 및 제재조치

신청요건

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행위 등의 불공정무역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

제재조치

- 수입·판매·제조·수출 중지
- 반입배제 및 폐기처분
-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
- 정정광고
- 과징금

